



일본의 보험계약이전 규제완화 사례와 시사점

오승연 연구위원, 이소양 연구원

- 보험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험계약 일부 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
 - 현재 우리나라 보험업법의 임의적 계약이전 조항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
- 일본은 2013년 보험업법 개정 시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함해야 하는 포괄적 계약이전 규제를 폐지함
 - 2000년 당시 일본에서는 포괄적 계약이전 규제로 인해 경쟁력 강화 및 사업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목적으로 한 사전적 구조조정에 제약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
 - 보험계약 이전단위 규제 폐지로 동일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모집채널이 다른 계약들을 일부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짐
 - 동 개정법은 이의의 성립 요건 비율을 기존의 1/5에서 1/10로 강화하였고, 이전절차 중에는 이전대상 보험계약과 동일 종목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규제도 폐지함
- 사전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, 제도 개선차원에서 포괄적 계약이전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
 - 우리나라 현행 보험법상 보험계약의 이전단위를 결정하는 ‘책임준비금 산출 기초 동일’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임의적 계약이전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
 - 이전단위규제 검토 시 계약자보호를 위해 개별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, 보험금 청구권 확보, 서비스 및 배당수준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
 - 일본의 경우와 같이 신규 계약자에게 계약이전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동일 종목의 신계약 체결 금지조항 폐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

1. 검토배경



- 거시경제 환경 악화,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험계약 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
 - 보험계약 이전은 금산법상 강제적 계약이전과 보험업법상 임의적 계약이전으로 구분되는데, 여기서 계약 이전은 부실회사 정리차원이 아닌 사전적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적 계약이전을 말함
 - 지속적인 저성장과 저금리로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비용감축과 자본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일부 보험계약의 이전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
- 현재 우리나라 보험업법의 임의적 계약이전 조항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¹⁾
 - 다만, 예외적으로 보험회사 간 일부 계약의 이전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
 - 2003년 하나생명은 방카슈랑스 전문보험회사로 전환하고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계약의 일부를 알리안츠 생명에 이전함
- 독일, 영국, 미국, 일본의 경우 포괄이전제도와 같은 이전단위규제가 존재하지 않음
 - 독일은 1901년에 제정된 사보험사업자법에서 보험계약 이전 시 보험계약의 종목을 이전단위로 해야 된다고 규정했으나 1975년 사보험사업자법의 후신인 보험감독법(VAG)이 개정되면서 보험계약의 이전단위규제는 폐지됨
 - 일본은 1912년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포괄이전제도를 도입하였으나, 2013년 이전단위 규제를 폐지시킴
-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이전단위 규제가 폐지된 배경과 그 과정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, 우리나라 임의적 계약이전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함

1) 보험업법 제140조 1항(보험계약 등의 이전)에 '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'고 되어 있음

2. 일본의 포괄이전규제 폐지의 배경과 주요 논의



가. 과거 일본의 포괄이전제도

■ 1912년 도입된 일본의 포괄이전제도의 보험계약 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됨

-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험회사(이전회사) 및 이전계약을 받는 보험회사(인수회사)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, 이 결의를 위한 소집통지는 보험계약 포괄이전의 요지를 포함해야 함²⁾
-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해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개별 동의가 요구되지 않음
 - 이전대상 보험계약자 중 이의를 제기한 자의 수가 전체의 1/5을 넘지 못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자에 해당되는 보험계약의 채권 금액이 전체 이전대상 보험계약의 채권 금액의 1/5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전대상 보험계약 전부가 이전을 승인할 것으로 간주됨
-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해야 보험계약의 포괄이전의 효력이 발생함

■ 포괄이전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보험계약집단의 유지,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확보, 이전대상 보험계약자의 집단적 동의 취득 등이 있음³⁾

- (보험계약집단의 유지) 동종 보험계약 중 임의로 개별 보험계약을 선택해 이전할 수 있다면 잔존 보험계약자단체의 위험이 증가해 보험사업의 경영상 지장이 생길 수 있음⁴⁾
- (보험계약자간 형평성) 동종 보험계약 중 일부만이 이전되면 이전회사에 잔존한 보험계약자와 인수회사로 이전되는 보험계약자간의 보험금 지급가능성, 계약자배당 수준 및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 (집단적 동의 취득) 이전대상 보험계약의 수가 매우 많을 경우 개별적 동의 취득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보험계약자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음⁵⁾

2) 이 결의가 있을 때부터 보험계약의 포괄이전을 완료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때까지 이전회사는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

3) 도입 당초에는 도입 목적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 이후 일본 보험업법 개정 시 관련 설명 자료에는 상기 도입 목적을 언급함

4) 1939년 보험업법 개정 시 보험업법 개정조사위원회의 관계자는 상기 내용과 관련해 설명함

5) 1916년 발간된 松本烝治의 보험업법에 관한 설명에는 관련 논술이 있음

나. 포괄이전규제 폐지의 배경

■ 포괄적 이전단위 규제는 도입 당시에 비해 보험산업 환경이 변화하여 규제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됨

-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동일한 계약을 단위로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, 보험상품 종류의 다양화, 고객 특성의 다양화,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판매 업무 대리 등 판매채널의 복선화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움

■ 특히 2000년 당시 판매채널의 다양화, 전문화를 반영한 사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음

-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법은 판매채널에 따라 다르므로 대면채널 전문회사와 통신 판매 및 인터넷 판매 전문회사의 경우 사업 운영에 있어서 조직화, 경영자원의 배분도 달라짐
-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특화된 판매채널 회사로 전문화 등이 강조되면서 이를 위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

■ 보험산업의 포괄적 계약이전 규제로 인해 경쟁력 강화 및 사업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목적으로 한 사전적 구조조정에 제약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

- 일본은 2000년 상법개정에 따라 회사 분할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나, 보험산업은 포괄적 계약이전 규제로 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

■ 일본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6년 4월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, 이로 인해 예정이율 및 예상사망률이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회사 분할 등의 구조조정 시 보험계약 승계 단위가 어디 까지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음

- 당시 보험상품의 종류나 종목이 달라도 예정 이율과 예정 사망률이 동일하다면 “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동일한 보험”으로 처리된다는 해석도 존재했음⁶⁾
- 반면, 상품설명서의 예정 사업비 비율이 동일 종목이라 하더라도 상품마다 다를 경우 계약이전 단위가 상품 종류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

■ 이러한 문제제기를 배경으로 2007년 9월부터 금융청 주도로 보험계약 이전단위 규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⁷⁾

- 보험회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 효율화와 보험계약자 간의 공정성 및 계약자 보호라는 두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짐

6) 梅本剛正(2003),「保険業法逐条解説 (XIX)」生命保険論集144号171頁注4 (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)

7) 金融審議会金融分科会第二部会(2007),「銀行・保険会社グループの業務範囲規制のあり方等について」10頁

다. 이전단위규제 폐지 시 계약자보호 논의⁸⁾

■ (이전대상 보험계약자 보호) 개별 보험계약자 의사반영, 보험금 청구권 확보, 서비스 수준 확보, 배당수준 확보 등이 논의되었음

- 개별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 도입과 내각총리대신의 인가 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영국과 미국의 보험계약 이전제도와 비교하여 논의됨
 - 당시 일본 보험법 하에 제공되는 정보는 포괄이전에 관한 요지, 이전회사 및 인수회사의 대차대조표, 인수회사의 상호 등으로 한정됨
 - 이의제기절차의 실효성을 위해 이전대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충실해야 하며, 영국과 미국처럼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받을 수 있는 영향, 이전회사 및 인수회사의 자산, 부채, 책임준비금, 지급여력비율의 변화 등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
 - 또한 현행법은 일간신문지에 의한 정보공시나 전자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과 미국처럼 개별 통지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음
- 보험금청구 재원의 확보를 위해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인수회사로 이전한 후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이전회사가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음
- 내각총리대신의 인가 과정에서 인가신청서의 붙임 서류로서 인수회사의 이전대상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서를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됨
- 계약자 배당수준의 확보를 위해 내각총리대신의 인가에 필요한 인가신청서의 붙임서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⁹⁾
 - 보험계약자의 미래 예상되는 배당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되는 자산의 금액, 인수회사의 배당 경향, 보험계약의 포괄이전 후의 이전회사 및 인수회사의 장래수지분석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

■ (이전회사 잔존 보험계약자 보호) 이전대상 보험계약과 이전회사의 잔존 보험계약의 분할 방법 및 계약자 배당 수준의 확보가 내각총리대신의 인가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

- 보험금청구권의 확보, 서비스 수준 확보는 잔존 보험계약의 상대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님

■ (인수회사 원래 보험계약자 보호) 그룹 내의 보험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한해 보호 논의가 이루어짐

8) 野口 直秀(2008), “保険会社の事業再編法制について”, 生命保険論集第 165号

9) 매년도의 통상배당에서 내부유보를 위해 분해할 수 없는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장기간 계속된 보험계약의 소멸 시에 특별배당을 실시하기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, 보험계약의 포괄이전을 보험계약의 소멸과 동일시해 특별배당으로 배당돼야 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이 인수회사로 승계돼야 함

- 그룹 재편을 위한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의 적절성 및 인수회사의 건전성이 대폭 악화되지 않도록 내각총리대신의 인가 조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
- 독일과 일본의 계약이전제도는 집단적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를 지향하는 반면, 영국과 미국은 보험계약자 개인의 의사를 보다 중시한다고 볼 수 있음
 - 독일과 일본은 감독당국의 인가에 의해 계약이전이 이루어짐
 - 이의성립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개별 계약자도 계약이전에 따라야 하고, 이의성립 요건이 만족되면 계약이전에 동의하는 계약자도 이전회사에 잔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별 계약자의 이해가 무시되는 측면이 있음
 -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의신청이 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되며, 개별 보험계약자의 해약 또는 이전거절을 행할 수 있는 기간을 분명히 제시한다는 점에서 개별 계약자 의사가 보다 반영되는 제도라 할 수 있음

3. 일본의 이전단위규제 폐지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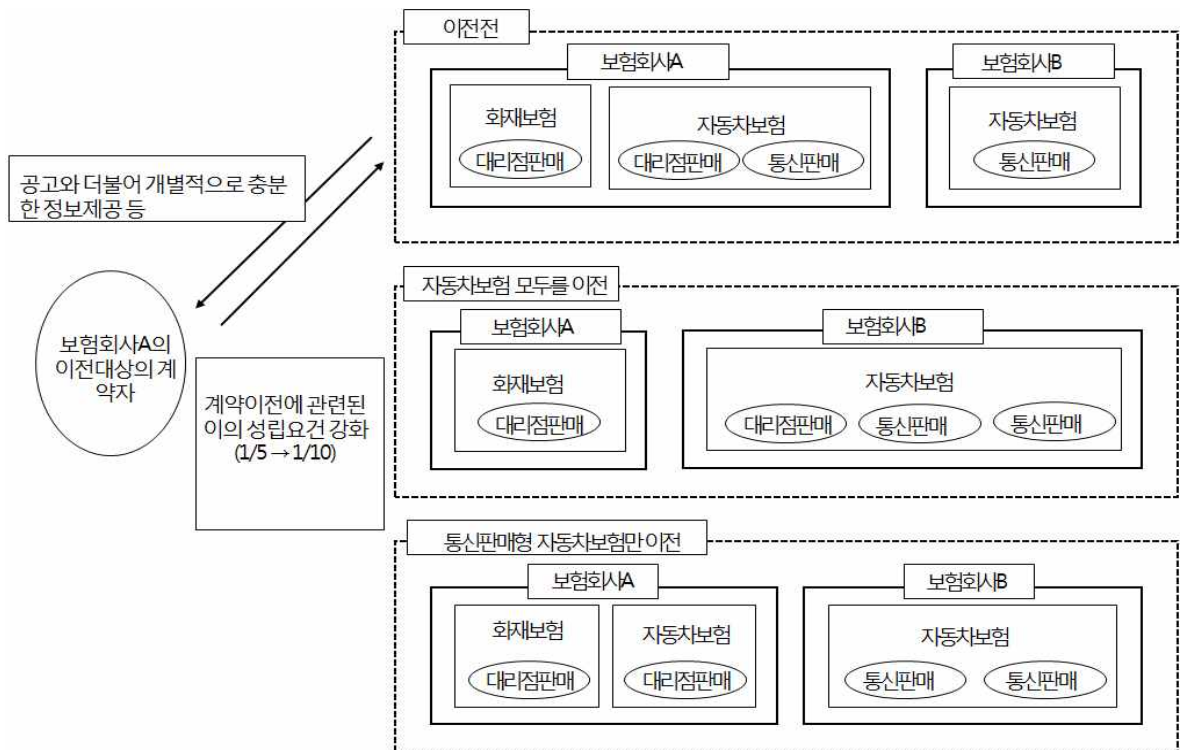


가. 이전단위규제 폐지의 내용

- 2013년 일본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계약 이전 시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함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이전단위규제가 폐지됨
 - 일본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인가제를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확보와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한 후 이전단위규제를 폐지함
 - 동 개정법은 이의의 성립 요건에 대해 이전대상 보험계약자의 수 및 그에 해당되는 보험계약 채권의 금액이 각각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의 1/5에서 1/10로 하향조정함
 - 또한 이전회사는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험계약이 이전하기로 된 경우에 해약을 제기한 이전대상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이전의 전달까지 피보험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
- 보험계약 이전단위 규제 폐지로 동일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모집채널이 다른 계약들을 일부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짐
 - <그림 1>에서 보듯이 이전단위 규제가 존재할 때는 보험회사 A가 자동차보험 종목을 이전할 때 모든

채널의 계약을 전부 이전해야 했으나, 이전단위 규제 폐지로 보험회사 A가 대리점 판매 자동차보험은 보유하고 통신판매 자동차보험만 이전이 가능해짐

〈그림 1〉 보험계약 이전단위 규제 폐지에 따른 변화



자료: 일본 금융청(2012. 3), “保険業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概要”

■ 한편, 이전회사가 이전절차 중에는 이전대상 보험계약과 동일 종목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규제도 폐지됨

- 외국보험회사가 일본지점을 현지법인화 할 경우에,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보험계약의 갱신 등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
- 이에 판매정지규정을 폐지하되, 이전 절차 진행 중에 이전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과 동일 종목 계약을 모집할 경우 보험계약이 인수회사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계약자의 승낙을 얻는 것을 의무화하였음

나. 우리나라 임의적 계약이전제도와 비교

■ 현행 우리나라 보험업법상 임의적 계약이전은 포괄이전제도로써 이전대상 계약자 통지, 이의성립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

- 보험업법 제140조 1항(보험계약 등의 이전)에 ‘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’고 되어 있음
- 제140조 3항에서 ‘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’고 규정함
- 보험업법 제141조(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 제기) 1항은 ‘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’하도록 하고 있음
- 보험업법 제142조(신계약의 금지)에서 ‘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음

〈표 1〉 일본과 한국의 임의적 계약이전제도 비교

구분	일본		한국
	이전단위규제 폐지 전	이전단위규제 폐지 후	
이전단위규제	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동일한 계약	없음	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동일한 계약
이의성립 요건	보험계약자 총수와 보험금 총액의 1/5 초과	보험계약자 총수와 보험금 총액의 1/10 초과	보험계약자 총수와 보험금 총액의 1/10 초과
동일종목의 신계약 체결	금지	허용	금지

4. 시사점



-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상시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임의적 계약이전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차원에서 포괄적 계약이전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
- 우리나라 현행 보험법상 보험계약의 이전단위를 결정하는 ‘책임준비금 산출 기초 동일’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, 임의적 계약이전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
- 상품의 종류가 달라도 예정 이율과 예정 사망률이 동일한 경우도 있으며, 동일 종목이라 하여도 판매된

시점에 따라 예정 이율은 달라질 수 있음

- 포괄이전단위가 보험종목인지 특정 보험상품인지 분명하지 않음

■ 보험계약의 이전단위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, 일본에서 논의된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논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임

- 이전 대상 계약자의 경우 개별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, 보험금 청구권 확보, 서비스 수준 확보, 배당수준 확보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
- 금융위원회의 일부 계약이전 인가의 요건으로 잔존 보험계약집단이 건전하게 유지되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
 - 이전회사 잔존 계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전단위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리스크가 큰 계약만이 이전회사에 남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

■ 일본의 경우와 같이 신규 계약자에게 계약이전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동일 종목의 신계약 체결 금지조항 폐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

- 신계약 금지의 취지로 애초 계약이전 취지에 반한다는 측면과 절차상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, 일본과 같이 신계약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갖춘다면 신계약 허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¹⁰⁾

■ 계약이전 결의 후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전 대상 계약자에게 개별통지가 아닌 공고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, 비용과 편익을 평가해서 이의신청 관련한 개별통지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

- 이전대상 계약자에 대한 개별 통지의 편익은 개별 계약자 의사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고, 비용은 시간과 비용이 커짐에 따른 효율성 감소로 볼 수 있음 [kiri](#)

10) 한기정(2019), 『보험업법』, 박영사